

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2004. 7. 20(화)
관광건설위원장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4년 7월 5일 충청북도지사
- 나. 회부일자 : 2004년 7월 5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30회 정례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 (2004. 7. 14)
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 및 의결

2. 제안설명

(제안설명자 : 문화관광국장 꺽 연 창)

가. 제안이유

-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개정(2003.5.29)으로 박물관·미술관업무가 2004년 1월 1일부터 시·도로 이양됨에 따라, 박물관·미술관과 관련한 주요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-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32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문화재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함(제5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박 일 수)

-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- 박물관·미술관 업무가 시·도로 이양됨에 따라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32조 제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문화재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답변 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생략

6. 수정안의 요지

가. 수정이유

-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32조제2항 각호 사항에 대한 자문을 문화재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한 강제의무조항을 재량조항으로 수정하고자 함

나. 수정 주요골자

-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5조 2항의 “위원회는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32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”를 “위원회는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32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”로 함

7. 심 사 결 과 : 수정안 가결

8. 소수 의견 요지 : 없 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

-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-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제안년월일 : 2004. 7. 14

제안자 : 한창동 의원의

가. 수정이유

-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32조제2항 각호 사항에 대한 자문을 문화재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한 강제의무조항을 재량조항으로 수정하고자 함

나. 수정 주요골자

-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5조 2항의 “위원회는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32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”를 “위원회는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32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”로 함

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

안 제5조제2항중 “자문한다”를 “자문할 수 있다”로 한다

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	수정안
<p>제5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과 그 해제 2.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.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(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보호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 4.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에 관한 사항 5.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현상 변경 또는 도의 반출의 허가에 관한 사항 6.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환경 보전을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 제거이전 등에 관한 사항 7.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매입 8.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존·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인 사항으로 중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 9. 무형문화재 전수교육보조자 및 장학생 대상자 선임 10. 기타 문화재관리에 관하여 도지사가 부의 하는 사항 	<p>제5조(심의및자문사항) ①위원회는 문화재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과 그 해제 2.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.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(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보호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 4.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에 관한 사항 5.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현상 변경 또는 도의 반출의 허가에 관한 사항 6.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환경 보전을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 제거이전 등에 관한 사항 7.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매입 8.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존·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인 사항으로 중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 9. 무형문화재 전수교육보조자 및 장학생 대상자 선임 10. 기타 문화재관리에 관하여 도지사가 부의 하는 사항 <p>②위원회는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32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</p>	<p>제5조 ① 개정안과 같음</p> <p>②위원회는 박물관및 미술관진흥법 제32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.</p>

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심의 및 자문사항) ①위원회는 문화재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과 그 해제
2.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
3.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(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보호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
4.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에 관한 사항
5.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현상변경 또는 도외 반출의 허가에 관한 사항
6.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환경보전을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·제거·이전 등에 관한 사항
7.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매입
8.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존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인 사항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9. 무형문화재 전수교육보조자 및 장학생 대상자 심의
10. 기타 문화재관리에 관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

②위원회는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32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구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과 그 해제 2.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.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(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보호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 4.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에 관한 사항 5.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현상 변경 또는 도의 반출의 허가에 관한 사항 6.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환경 보전을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 제거이전 등에 관한 사항 7.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매입 8.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존·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인 사항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9. 무형문화재 전수교육보조자 및 장학생 대상자 심의 10. 기타 문화재관리에 관하여 도지사가 부의 하는 사항 	<p>제5조(심의및자문사항) ①위원회는 문화재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과 그 해제 2.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.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(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보호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 4.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에 관한 사항 5.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현상 변경 또는 도의 반출의 허가에 관한 사항 6.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환경 보전을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 제거이전 등에 관한 사항 7.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매입 8.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존·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인 사항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9. 무형문화재 전수교육보조자 및 장학생 대상자 심의 10. 기타 문화재관리에 관하여 도지사가 부의 하는 사항 <p>②위원회는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32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.</p>

관련법령 발취

【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】

제32조(중요사항의 자문)①문화관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문화재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.

1.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시책
2.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자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시·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5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문화재에 관한 자문기관이나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박물관협회 또는 미술관협회에 자문할 수 있다.

1.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계획
2.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
3.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자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

【문화재보호법】

제55조(시·도지정문화재의 지정등)

- ⑤시·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, 관리, 보호·육성, 공개 및 문화재에 관한 자문기관의 설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